

「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구미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내 시민의 이용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, 특정 종목 사용료 신설 요구 등에 따른 사용료를 정비하고 「만 나이 통일법」 시행에 따라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외요금 및 특정종목 일일요금 신설 등 사용료 정비(안 별표 1)
- 「만 나이 통일법」 시행 관련 규정 반영(안 별표 1, 별표 4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구미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관외 이용자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집행기관에서는 요금에 관한 이용자들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용요금 등의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임.